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21. 10. 19.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1.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10. 6.

다. 상정일자: 2021. 10. 14.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나. 제안이유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의 인권 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행정 사례공유 및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인권협력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됨

###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3조)

- 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안 제4조~제7조)
- 다.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등(안 제8조~제11조)
- 라.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위촉,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12조~제14조)
- 마. 경비 부담 및 회계보고·결산 등(안 제15조~제20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협조부서: 감사담당관
- 다. 예산조치: 매년 본예산에 협의회 분담금 100만 원 반영
- 라. 규약전문: 별첨

####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가. 운영 규약 취지
  - 본 동의안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인권행정사례 공유,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해 설립된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인권협력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나. 조문별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 협의회 목적과 명칭, 기능
-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 협의회 구성 및 회원의 의무, 임원의 임기

-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 회의 방법,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
-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
- 안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
  - 경비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각종 조사, 분석 및 연구,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대응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 강화,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회원의 결의사항 준수 및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와 임원의 구성에 대해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권역별로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와 제8조의1에서는 회의 개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참석회의,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개최하도록 하였고
-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실무협의회, 자문위원과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우리 구는 2014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인권사업은 ‘인권행정 기반구축, 인권교육 확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친화적 도시환경조성,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정책목표, 13개 분야, 18개 중점과제, 총 66개 사업으로 매년 부서별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인권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노력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권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 간 인권협력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운영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본 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인권의 실질적인 보호와 보장을 위해서는 인권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법적·행정적 인권보장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